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청약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기침 및 인후통 등 유증상 시
- 입장 시 손 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체온측정 등)에 불응할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자 및 관련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공동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7.(수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62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30.(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301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공동주택은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동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공동주택은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X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 분 | 무순위 사후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
| 일 정 | 08월 22일(월요일) | 08월 25일(목요일) | 08월 26일(금요일) |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 <p>당사 건본주택 (주 소 : 춘천시 안마산로 14)</p>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2.02.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산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연립) 지하 1층 지상 4층 5개동 총 99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24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 (문화재 관련 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잔여세대 | 잔여세대 동.호수 | |
|----------|------------|-----|-----------------|------|------|-----------|--------------------|
| | | | | | | 동 | 호수 |
| 민영 주택 | 2022910262 | 84A | 84.4666A | 84A | 9 | 102 | 102, 103, 104 |
| | | | | | | 103 | 101, 104 |
| | | | | | | 104 | 101, 103 |
| | | | | | | 105 | 101, 105 |
| | | 84B | 84.2149B | 84B | 10 | 101 | 202, 204, 205, 206 |
| | | | | | | 104 | 201, 204 |
| | | | | | | 105 | 203, 204, 205, 207 |
| | | 122 | 122.0903 | 122 | 3 | 103 | T103, T104 |
| | | | | | | 105 | T102 |
| | | 140 | 140.4553 | 140 | 2 | 102 | 304 |
| | | | | | | 103 | 301 |
| | | 합 계 | | | | | 24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주택형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동(호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회 | 2회 | 1회(10%) (2022-11-20) | 2회(10%) (2023-02-20) | 3회(10%) (2023-05-20) | 4회(10%) (2023-08-20) | 5회(10%) (2023-11-20) | 6회(10%) (2024-02-20) | | |
| | | | | | |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 | | | | |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 |
| 84A | 9 | 102동(104~106) | 171,667,000 | 452,577,000 | | 624,244,000 | 10,000,000 | 52,424,400 | 62,424,400 | 62,424,400 | 62,424,400 | 62,424,400 | 62,424,400 | 62,424,400 | 62,424,400 | 187,273,200 |
| | | 102동(101~103) 103동(101-104) 104동(101~102) | 164,636,000 | 434,041,000 | | 598,677,000 | 10,000,000 | 49,867,700 | 59,867,700 | 59,867,700 | 59,867,700 | 59,867,700 | 59,867,700 | 59,867,700 | 59,867,700 | 179,603,100 |
| | | 104동(103~104) 105동(101~107) | 166,198,000 | 438,160,000 | | 604,358,000 | 10,000,000 | 50,435,800 | 60,435,800 | 60,435,800 | 60,435,800 | 60,435,800 | 60,435,800 | 60,435,800 | 60,435,800 | 181,307,400 |
| 84B | 10 | 101동(201~206) 104동(201~202) | 162,717,000 | 428,980,000 | | 591,697,000 | 10,000,000 | 49,169,700 | 59,169,700 | 59,169,700 | 59,169,700 | 59,169,700 | 59,169,700 | 59,169,700 | 59,169,700 | 177,509,100 |
| | | 104동(203~204) 105동(201~207) | 164,275,000 | 433,087,000 | | 597,362,000 | 10,000,000 | 49,736,200 | 59,736,200 | 59,736,200 | 59,736,200 | 59,736,200 | 59,736,200 | 59,736,200 | 59,736,200 | 179,208,600 |
| 122 | 3 | 103동(T101~T104) | 212,184,000 | 559,424,000 | 55,942,400 | 827,550,400 | 10,000,000 | 72,755,040 | 82,755,040 | 82,755,040 | 82,755,040 | 82,755,040 | 82,755,040 | 82,755,040 | 82,755,040 | 248,265,120 |
| | | 105동(T101~T107) | 214,444,000 | 565,382,000 | 56,538,200 | 836,364,200 | 10,000,000 | 73,636,420 | 83,636,420 | 83,636,420 | 83,636,420 | 83,636,420 | 83,636,420 | 83,636,420 | 83,636,420 | 250,909,260 |

| | | | | | | | | | | | | | | | | |
|-----|---|--------------------------------|-------------|-------------|------------|-------------|------------|------------|------------|------------|------------|------------|------------|------------|------------|-------------|
| 140 | 2 | 102동(301~306) 103동(301~304) | 227,830,000 | 600,676,000 | 60,067,600 | 888,573,600 | 10,000,000 | 78,857,360 | 88,857,360 | 88,857,360 | 88,857,360 | 88,857,360 | 88,857,360 | 88,857,360 | 88,857,360 | 266,572,080 |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각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입주자 모집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84.4666A | 84.2149B | 122.0903 | 140.4553 |
| 약식표기 주택형 | 84A | 84B | 122 | 140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증감 부분을 계산하여 잔금납부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이하 단소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동별 사용승인포함)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 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 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계약자 대상)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 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인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구분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서류 | 서약서 |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 |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안내(신청자용) |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 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신분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출입국 사실증명원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청약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신분증 | 대리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08.26.(금요일)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공동주택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 | 정부수입인지 | 계약일 당일까지 발급(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은행에서 구입) |
|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공통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발급일 확인(용도 : 공동주택 계약위임용) |
|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견본주택 비치 |
|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8.11.(목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등·호수 선정 : **2022.08.27.(토요일) 10:0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등·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등·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2.08.27.(토요일)** 등·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공동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분양대금 납부 및 발코니 확장 · 추가선택 품목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KB국민은행 | 349401-04-314320 | 케이비부동산신탁㈜ |

-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1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VAT포함)

| 주택형 |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 계약금(10%) / 계약시 | 잔금(90%) / 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 | 14,850,000 | 1,485,000 | 13,365,000 | |
| 84B | 13,860,000 | 1,386,000 | 12,474,000 | |
| 122 | 19,800,000 | 1,980,000 | 17,820,000 | |
| 140 | 24,310,000 | 2,431,000 | 21,879,000 | |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안내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KB국민은행 | 349401-04-322118 | 케이비부동산신탁㈜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비는 계약금 (10%), 잔금 (9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입금증, 이체확인서 등)을 견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 '1010301홍길동']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완료시 고지된 것으로 하고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발코니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확장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에 의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화장실 / 현관 등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및 브랜드, 창틀, 크기, 하드웨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간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보관된 물품 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정 면적 및 확장구간의 폭,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실외기는 외부 테라스나 지붕에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다소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시켜야 합니다.
- 세대 내부 발코니, 천정내부에 환기장치(전열교환기)의 설치로 다소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층 오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보일러실 연도 간섭으로 인한 발코니 창호는 일면 개방형 창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① 유상옵션(가전)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품 목 | 제조사명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 고 |
|------------|----------------------|------|-------------|-----------|----------|-----------|-----|
| 84A 84B | 4도어 냉동냉장고 (비스포크) | 삼성전자 | RF60B91R2AP | 3,069,300 | 306,930 | 2,762,370 | |
| | 3도어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 | RQ33A74E1AP | 1,836,000 | 183,600 | 1,652,400 | |
| | 식기 세척기 (도어판넬 부착형) | | DW60T7065SS | 1,088,500 | 108,850 | 979,650 | |
| 122 140 | 4도어 냉동냉장고 (비스포크) | 삼성전자 | RF60B91R2AP | 3,111,100 | 311,110 | 2,799,990 | |
| | 3도어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 | RQ33A74E1AP | 1,917,700 | 191,770 | 1,725,930 | |
| | 식기 세척기 (도어판넬 부착형) | | DW60T7065SS | 1,088,500 | 108,850 | 979,650 | |

- 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② 유상옵션(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구분 | | 설치위치 | 제조사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 고 |
|-----|------|-----|-------------------------|------|-----------|----------|-----------|-----|
| 84A | 선택 1 | 2 대 | 거실, 안방(침실 1) | 삼성전자 | 3,746,600 | 374,660 | 3,371,940 | |
| | 선택 2 | 4 대 | 거실, 안방(침실 1), 침실2, 3 | | 6,356,600 | 635,660 | 5,720,940 | |
| 84B | 선택 1 | 2 대 | 거실, 안방(침실 1) | | 3,740,600 | 374,060 | 3,366,540 | |
| | 선택 2 | 5 대 | 거실, 안방(침실 1), 침실2, 3, 4 | | 7,456,500 | 745,650 | 6,710,850 | |
| 122 | 선택 1 | 2 대 | 거실, 안방(침실 1) | | 3,746,600 | 374,660 | 3,371,940 | |
| | 선택 2 | 5 대 | 거실, 안방(침실 1), 침실2, 3, 4 | | 7,833,200 | 783,320 | 7,049,880 | |
| 140 | 선택 1 | 2 대 | 거실, 안방(침실 1) | | 3,746,600 | 374,660 | 3,371,940 | |
| | 선택 2 | 5 대 | 거실, 안방(침실 1), 침실2, 3, 4 | | 7,847,500 | 784,750 | 7,062,750 |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③ 유상옵션 (제습 흰)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형 | 구 분 | 설치위치 | 제조사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 고 |
|---------------|-----|-----------------|------|-----------|----------|-----------|-----|
| 84A, 84B, 140 | 1 대 | 드레스 룸 | 삼성전자 | 1,073,600 | 107,360 | 966,240 | |
| 122 | 2 대 | 드레스 룸 | | 2,147,200 | 214,720 | 1,932,480 | |
| | 3 대 | 드레스룸(2), 팬트리(1) | | 3,220,800 | 322,080 | 2,898,720 | |

■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추후 유상옵션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30.(목요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춘천삼부르네상스더테라스.com) 참고 바람.

■ 주택전시관 위치 : 춘천시 안마산로 14

■ 분양문의 : 033-242-0203